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열린 의회

#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박순범 의원 외 15명)

#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박순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8
----------	-----

발의연월일 : 2024. 2. 16.

발 의 자 : 박순범·백순창·남영숙  
김대일·권광택·황명강  
황두영·배진석·박용선  
박영서·남진복·박승직  
박채아·허 복·이우청  
김창기 의원(16명)

## 1. 제안이유

- 주택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보증료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보증료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보증금 반환보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조례안: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 5.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검토완료

§ 예산입법담당관-154(2024. 2. 5.)호

나.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무혁신담당관 [정책기획관-1766(2024. 2. 10.)호]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 [정책기획관-1766(2024. 2. 10.)호]

라. 해당부서 의견: 없음

§건축디자인과 [정책기획관-1766(2024. 2. 10.)호]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6.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증료의 지원 범위,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4조(보증료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2.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도지사가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규정에 의거 주택 임차 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미이행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상품에 가입을 위한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는바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은 제3조(보증료 지원), 제8조(교육 및 홍보)에 해당 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상기 제정 조례안은 재정지원이 필요·가능한 대상 및 지원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 4.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지방시설주사 임서영 (054-880-4020)



# 경 상 북 도



수신 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

1. 건축디자인과-3797(2024.2.6.)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안은 우리 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의 보증상품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코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반환보증료 지원·관련 교육 규정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환보증료 지원 범위, 시기,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li> <li>• 다만,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매년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등 주택시장의 제반여건 등으로 인해 반환보증료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도 예측되는 바, 반환보증료 지원계획 수립 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ul>

끝.

예산담당관 *권미숙*

주무관	<b>윤종오</b>	예산총괄담당	<b>권미숙</b>	예산담당관	<b>윤희환</b>	전달 2024. 2. 8.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066	(2024. 2. 8.)		접수	건축디자인과-3907	(2024. 2. 8.)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풍천면 도청대로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4	팩스번호	054-880-2369		/ lackof2pro@korea.kr	/ 비공개(5)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이입니다.